

의안번호	2205333
의 퇴 인	모경종의원
회 답 일	2024. 12. 18.
추 계 번호	24D488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36억원~5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87억 3,500만원~281억 300만원(연평균 37억 4,700만원~56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							
안 제27조의2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3,600	3,672	3,745	3,820	3,896	18,735	3,747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에 해당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							
안 제27조의2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금 지원)	5,400	5,508	5,618	5,730	5,845	28,103	5,620

주.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거주 주민의 수 및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의2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와 접하고 있는(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월곶리, 송해면에 위치한 송뢰리·당산리, 양사면에 위치한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해해상경계지역”이라 한다)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2호)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7조의2(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특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대산리, 월곶리, 송뢰리, 당산리, 북성리, 인화리, 철산리, 교산리)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¹⁾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거주 주민에게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월 10만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월 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²⁾하고 있음
- 서해5도 거주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의 50%,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해해상경계지역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추계함
-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해당 지역 인구 3,066명³⁾의 90%가 6개월 이상

1)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사업인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236-300)에서 지원중, 지원 단가는 2024년 기준임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추계기간 동안 인구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행정안전부의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을 준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거주한 주민 중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율은 68%로 추정됨⁴⁾

□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⁵⁾을 적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 [참고자료 1] 접경지역 현황

3) 서해해상경계지역 주민 수

(단위: 명)

구 분			주민 수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77
		북성1리	196
		북성2리	175
		교산1리	223
		교산2리	233
		인화1리	196
		인화2리	240
	송해면	송퇴1리	148
		송퇴2리	224
		당산리	271
	강화읍	대산리	325
월곶리		758	
합 계			3,066

주. 2024년 10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4) 행정안전부 2023년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236-300) 사업설명자료에서 발췌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11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6개월 이상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거주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민 1인당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금액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구분
- (시나리오1) 서해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의 50%를 매월 지급
 - 2024년 기준 5만원(6개월 이상 거주자), 8만원(10년 이상 거주자)
 - (시나리오2) 서해5도에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75%를 매월 지급
 - 2024년 기준 7.5만원(6개월 이상 거주자), 12만원(10년 이상 거주자)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를 지급	6개월 이상 거주자	1,724	1,758	1,793	1,829	1,866	8,972
	10년 이상 거주자	1,876	1,913	1,951	1,990	2,030	9,762
	합계	3,600	3,672	3,745	3,820	3,896	18,735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를 지급	6개월 이상 거주자	2,586	2,638	2,690	2,744	2,799	13,459
	10년 이상 거주자	2,813	2,870	2,927	2,986	3,045	14,643
	합계	5,400	5,508	5,618	5,730	5,845	28,103

주.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거주 주민의 수 및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 거주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2026년 36억원~5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87억 3,500만원~281억 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시나리오1)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50%를 지급	3,600	3,672	3,745	3,820	3,896	18,735
(시나리오2)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75%를 지급	5,400	5,508	5,618	5,730	5,845	28,103

주.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및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접경지역의 서해해상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및 정주생활지원금 단가의 증감에 따라 변동 가능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1] 접경지역 현황

시·군		면적(km ²)	읍면동수(개)	인구(명)
계		9,641	203	3,143,388
인천광역시	강화군	411	13	69,299
	옹진군	173	7	20,020
경기도	동두천시	96	8	86,889
	고양시	268	44	1,070,671
	파주시	674	23	510,140
	김포시	277	14	486,905
	양주시	310	12	288,273
	포천시	826	14	141,572
	연천군	676	10	40,8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117	25	286,110
	철원군	889	11	40,540
	화천군	909	5	22,975
	양구군	704	5	20,631
	인제군	1,646	6	31,532
	고성군	665	6	27,027

- 주 1.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5개 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3. 2024년 11월 30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